

돌봄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05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이수진 · 김정호 · 한민수
송옥주 · 김문수 · 박희승
남인순 · 전진숙 · 박홍배
백혜련 · 민병덕 · 서미화
박홍근 · 김 윤 · 박선원
문진석 의원(16인)

제안이유

돌봄은 모든 사람이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주기 동안 누군가로 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활동임. 이러한 돌봄은 개인의 인간다운 삶 과 지속가능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

그런데 돌봄의 공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 을 개인과 개별 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특히 여성에 게 부여된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마저 팽배하여 왔음. 그 결과 개인과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고, 돌봄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 참여와 그 조건이 제약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불평등의 결과를 초 래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과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하지만 돌봄노동

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돌봄의 수요에 비해 돌봄 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또한, 현재의 돌봄정책은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를 어떠한 비전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목적과 방향이 부재한 채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임.

기존의 돌봄정책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즉 돌봄과 관련한 산재된 법제도와 정책을 아우르며, 돌봄정책의 기본이념과 원칙,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일관된 비전으로 법제도와 정책이 개선·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로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돌봄의 공공적 가치 인정을 기초로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고, 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기틀 위에서 돌봄에 관한 법제도와 정책이 통합적·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하여 돌봄이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돌봄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국민의 돌봄에 대한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기본이념을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

다.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돌봄권을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법제상·재정상·행정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돌봄정책의 기본방향을 보편성 확보, 공공성 구현, 돌봄 및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통합적 제공 확대 등으로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돌봄청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돌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돌봄청장이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인력의 양성·공급 현황 등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돌봄청장이 돌봄권 보장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돌봄지표와 지역돌봄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돌봄지수와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대통령 소속 돌봄위원회를 설치하고, 돌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국가는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돌봄청장이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도록 함(안 제2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돌봄인력의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7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돌봄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추진에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협력하도록 하고, 돌봄의 질 제고와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공정한 이익 공유를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하. 매년 10월 29일 및 해당 일이 속한 1주일을 돌봄의 날 및 돌봄 주간으로 지정하고, 돌봄인력 양성체계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며,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8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돌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돌봄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며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이란 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장애인, 환자, 출산을 전후한 여성 및 가사 지원이 필요한 가구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 관리, 의식주 관리,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성장발달 지원, 생활 보조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돌봄노동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돌봄제공기관”이란 제2호의 돌봄노동자로 하여금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관 및 사업자(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돌봄노동자로부터 돌봄을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돌봄”이란 가족, 동거인 및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돌봄정책”이란 돌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돌봄에 관한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양질의 돌봄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일과 생활,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가족 또는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돌봄에 관한 권리(이하 “돌봄권”이라 한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돌봄 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돌봄의 제공주체와 이용자의 유형 및 특성,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연대를 통한 돌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돌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종사자가 일과 돌봄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돌봄제공기관은 돌봄의 공공적 가치가 구현되도록 돌봄을 성실히 제공하고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돌봄노동자는 이용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돌봄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돌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돌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돌봄정책의 기본방향

제8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돌봄정책은 인구구조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수립·시행하며, 모든 국민이 보다 나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② 돌봄정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돌봄제공기관·돌봄노동자·이용자·무급돌봄 제공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제9조(돌봄의 보편성 확보 및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돌봄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가구 형태, 거주지역,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돌봄권 보장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10조(돌봄의 공공성 구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공공적 가치와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돌봄과 돌봄제공기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돌봄과 돌봄노동의 가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과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무급돌봄 제공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안

정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의 통합적 제공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이 이용자의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할 때에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돌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13조(돌봄정책 기본계획) ① 정부는 돌봄정책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돌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돌봄의 수요와 공급 전망에 관한 사항

5. 돌봄노동자 및 돌봄 분야 종사자(이하 “돌봄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권익 개선에 관한 사항

6. 돌봄제공기관의 설치와 운영 전망에 관한 사항

7. 돌봄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돌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돌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돌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돌봄정책 지역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돌봄정책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

하는 해당 시·도의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돌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돌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돌봄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지역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돌봄청장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돌봄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돌봄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제19조에 따른 돌봄위원회에 통보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돌봄에 대한 수요 및 공급 현황(이용자 유형별·지역별 현황 및 무급돌봄 현황을 포함한다)
2. 돌봄인력의 양성 및 공급 현황
3. 돌봄인력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노동권 등 권리보장 현황
4. 돌봄제공기관의 부문별, 유형별, 지역별 설치·운영 현황
5. 그 밖에 돌봄청장이 정하는 돌봄 실태 파악에 필요한 사항

② 돌봄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법인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가돌봄지수 등) ① 돌봄청장은 국가의 돌봄권 보장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공급 상황, 돌봄의 공공성 실현 정도, 돌봄노동자의 근무환경 및 무급돌봄의 제공실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이용하여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④ 돌봄청장은 국가돌봄지수 및 지역돌봄지수 조사 결과, 돌봄권 보장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4항에 따른 돌봄과 관련된 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돌봄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 및 지역돌봄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국가돌봄지수, 제3항에 따른 지역돌봄지수의 내용 및 조사·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돌봄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돌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돌봄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돌봄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돌봄지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돌봄이용자·돌봄노동자·돌봄제공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돌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돌봄청장과 제4항제3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돌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3조(돌봄기금의 설치) ① 국가는 돌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4.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 및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돌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생애 전주기에 걸친 돌봄정책의 추진
3. 돌봄의 질 제고 및 제공 확대
4. 제26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5. 돌봄인력의 권익 향상 및 양성
6. 돌봄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7. 돌봄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8. 돌봄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9. 돌봄제공기관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운영 지원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돌봄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2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돌봄청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돌봄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돌봄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공급, 돌봄인력·돌봄제공기관·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돌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가 국민의 돌봄 이용 또는 그 밖의 돌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종류, 돌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돌봄인력의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돌봄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구조 등 사회적
· 경제적 여건 및 그 변화에 대응하는 돌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민관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돌봄을 폭넓게 제
공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추진에 민간부문이 조화롭게 참여할 수 있
도록 소통·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돌봄의 질 제고와 돌봄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돌
봄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
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실시할 수 있
다.

제30조(돌봄의 날) ① 국가는 돌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
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
정하며, 돌봄의 날이 속한 1주간을 돌봄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공급 및 돌봄
인력 양성체계의 국제 수준으로의 발전 등을 위하여 돌봄과 관련한

국제기구·국제회의 참여 및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돌봄정책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돌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